1. 개정이유

1994년 7월 6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17호)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에 증인 및 감정인 또는 참고인등에게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안 제2조제1항)
- ○ 비용지급이 예외되는자는 마포구의회의원,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받는 공무원(안 제3조제1호, 제2호)
- ○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 비용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안 제6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제3항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 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및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마포구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채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의 지급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11. 2.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4. 10. 2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4. 10. 27.

다. 상정일자 : 제25회임시회 제1차위원회('94. 11.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임동남 도시정비국장)

가. 제안이유

· '94. 4. 14. 서울특별시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동조례와 불일치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 체계와 통일성을 기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중 미비하였던 사항의 보완 및 일부규정을 완화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건축위원회 기능추가(안 제5조)

○ 건축지도원의 자격완화(안 제16조)

○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액 완화 및 조경공사 집행조항 신설(안 제19조)

○ 미관지구내 공장, 창고, 동물관련시설의 조경의무, 교정시설중 구치소의 용도제한 및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등의 규정완화(안 제28조, 제30조)

○ 교육연구시설중 사설학원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완화(안 제4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박관수 전문위원)

동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개정내용은 행정규제를 다소 완화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민원발생 소지도 다소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그동안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고급인력으로 한정하여 현실적으로는 선발에 어려움도 많았음은 물론 활용방안도 현재로서는 없는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건축지도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전병만 위원) :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38조, 제39조는 우리구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면 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 답변요지(임동남 도시정비국장) : 직접 우리구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도 법률체계상 있는것이 좋을것 같고, 제28조제1항제10호의 단서규정은 법원이나 검찰청등이 우리구에 들어올 경우 이조항이 있어야만 구치소를 건축할 수 있음.

○ 질의요지(이종만 위원) : 제16조의 건축지도원은 고용직으로 쓸것인가?

○ 답변요지(임동남 도시정비국장) : 건축지도원은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이며 정원규정등 제반규정이 선행되어야 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2

제출일자 : 1994. 10. 2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94. 4. 14.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동조례와 불일치 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 체계와 통일성을 기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중 미비하였던 사

항의 보완 및 일부규정을 완화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개정골자

○ 건축위원회 기능추가(안 제5조)
○ 건축지도원의 자격완화(안 제16조)
○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액 완화 및 조경공사 집행 조항신설(안 제19조)
○ 미관지구내 공장, 창고, 동물관련시설의 조경의무, 교정시설 중 구치소의 용도제한 및 건축선으로 부터 이격거리등의 규정완화(안 제28조, 제30조)
○ 교육연구시설중 사설학원의 경우 건축선으로 부터 이격거리 완화(안 제42조)

3. 개정근거

○ 건축법(1993.8.5. 법률 제4572호) 제4조, 제28조, 제32조 및 제45조
○ 건축법시행령(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제5조, 제24조, 제27조, 제65조, 제69조 및 제81조
○ 서울특별시건축조례(1994.4.14. 조례 제3094호) 제6조 및 제17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수반여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건축심의(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제외한다)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1.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소지자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자
4.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5.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6.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7.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제17조 제2항제2호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로 한다.

제18조 제1항의 표중 식재비율(퍼센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고 2미터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상록수는 30이상)

제19조 제1항중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공사비를 예탁한 건축주가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조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건축주의 동의없이도 조경예탁금으로 조경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경우 구청장은 집행결과를 정산처리한다.

제28조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중 "너비 3미터이상의 조경시설"을 "너비 1.5미터 이상의 조경시설"로 하고, 동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교정시설(다만, 구치소의 경우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30조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너비가 15미터미만인 경우와 미관지구내 도로로서 고저차등으로 인하여 주 간선도로 옆에 지선도로가 있는 경우로서 주 간선도로변에서 3미터이상 이격되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제3호의표, 용도란중 "교육연구시설중 학원"을 "교육연구시설중 학원(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문리계열중 입시학원에 한함)"으로 하고, 동조 제4호의 표, 용도란 중 "교육연구시설중 입시계학원"을 "교육연구시설중 학원(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문리계열중 입시학원에 한함)"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생략)	제5조(기능) (현행과 같음)
1.~19.(생략)	1.~19.(현행과 같음)
(신설)	20.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건축심의(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제외한다)
20.(생략)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제16조(건축지도원) ①영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정한다.	제16조(건축지도원) ①영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정한다.
1.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2.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소지자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4.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현 행	개 정 안
	6.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17조(대지안의 조경) ①(생략)	제17조(대지안의 조경) ①(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4.(생략)	3.~4.(현행과 같음)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제18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생략)	제18조(식재등의 조경기준) ①(현행과 같음)

구분	식재밀도(제곱미터)	식재비율(퍼센트)
교목	(생략)	교목을 500이상 식재(상록수는 30이상)
관목	(관목)	

구분	식재밀도(제곱미터)	식재비율(퍼센트)
교목	(현행과 같음)	수고 2미터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상록수는 30이상)
관목	(현행과 같음)	

②.~⑧.(생략)	②.~⑧.(현행과 같음)
제19조(조경공사비의 예탁) ①영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1인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 1급 2인이상이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조경공사비의 예탁) ①영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1인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 1급 2인이상이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으로 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신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공사비를 예탁한 건축주가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조경을 완료하지 않을경우에는 구청장이 건축주의 동의없이도 조경예탁금으로 조경을 집행할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집행결과를 정산처리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생략)	⑤(현행 제4항과 같음)
제28조(용도제한) ①(생략)	제28조(용도제한) ①(현행과 같음)
1.~4.(생략)	1.~4.(현행과 같음)
5. 공장(인쇄, 봉재, 필름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램 매체 제조업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것으로서 건축선에 면하여 너비 3미터 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공장(인쇄, 봉재, 필름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램 매체 제조업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것으로서 건축선에 면하여 너비 1.5미터 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건축선에 면하여 너비 3미터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건축선에 면하여 너비 1.5미터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동물관련시설(다만, 건축선에 면하여 너비 3미터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동물관련시설(다만, 건축선에 면하여 너비 1.5미터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교정시설	10. 교정시설(다만, 구치소의 경우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②.~④.(생략)	②.~④.(현행과 같음)
제30조(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너비가 15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너비가 15미터미만인 경우와 미관지구내 도로로서 고저차 등으로 인하여 주 간선도로옆에 지선도로가 있는 경우로서 주 간선도로변에서 3미터이상 이격되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able>
<tr><th colspan="3">현 행</th><th colspan="3">개 정 안</th></tr>
<tr><td colspan="3">②.~③.(생략)
제42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생략)
1.~2.(생략)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건축물</td><td colspan="3">②.~③.(현행과 같음)
제42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건축물</td></tr>
<tr><td>용 도</td><td>띄어야할 거리(미터)</td><td>적용대상 건 축 선</td><td>용 도</td><td>띄어야할 거리(미터)</td><td>적용대상 건 축 선</td></tr>
<tr><td>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중 학원</td><td>4</td><td>(생략)</td><td>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중 학원(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문리계열중 입시학원에 한함)</td><td>4</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의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td><td>3</td><td>(생략)</td><td></td><td>3</td><td>(현행과 같음)</td></tr>
<tr><td colspan="3">4. 아파트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건축물</td><td colspan="3">4. 아파트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건축물</td></tr>
<tr><td>용 도</td><td>띄어야할 거리(미터)</td><td>적용대상 건 축 선</td><td>용 도</td><td>띄어야할 거리(미터)</td><td>적용대상 건 축 선</td></tr>
<tr><td>아 파 트</td><td>6
(다만, 너비 15M미만 도로에 접한부분은 3)</td><td>(생략)</td><td>아 파 트</td><td>6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td>관람집회, 종교시설, 장례식장</td><td>2</td><td>(생략)</td><td>관람집회, 종교시설, 장례식장</td><td>2</td><td>(현행과 같음)</td></tr>
</table>

용 도	띄어야할 거리(미터)	적용대상 건 축 선	용 도	띄어야할 거리(미터)	적용대상 건 축 선
교육연구시설 중 입시계학원	3	(생략)	교육연구시설 중학원(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문리계열중입시학원에 한함)	3	(현행과 같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 안 번 호	348

제안일자 : 1994. 11. 4.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며,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5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94.11.30～94.12.6)
-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10인)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실로 한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며,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5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1994. 11. 30.(수) ——— 1994. 12. 6.(화) [7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마포구의회 사무국